



(19) 대한민국특허청(KR)
(12) 공개특허공보(A)

(11) 공개번호 10-2020-0048892
(43) 공개일자 2020년05월08일

(51) 국제특허분류(Int. Cl.)
A43B 3/24 (2006.01) A43B 23/02 (2006.01)
A43B 9/00 (2006.01)
(52) CPC특허분류
A43B 3/24 (2013.01)
A43B 23/0295 (2013.01)
(21) 출원번호 10-2018-0131515
(22) 출원일자 2018년10월31일
심사청구일자 없음

(71) 출원인
(주)이너스코리아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, 1513호 (재송동, 센텀아이에스타워)
(72) 발명자
김규덕
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11번길 38, 202(삼정동, 경성빌아파트)
(74) 대리인
김준수

전체 청구항 수 : 총 1 항

(54) 발명의 명칭 그물망 결합형 신발

(57) 요약

본 발명은, 신발의 일부 부품이 손상되는 경우에 그 일부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으며, 사용 용도나 취향에 따라 각 부품을 교체하여 신발의 기능성을 변경하거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아올러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조립에 의하여 신발을 완성함으로써 환경 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그물망 결합형 신발을 제공하고자 한다.

대표도 - 도1



(52) CPC특허분류
A43B 9/00 (2013.01)

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

과제고유번호 10070354

부처명 산업통상자원부

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

연구사업명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-글로벌디자인전문기업육성

연구과제명 중국 진장 신발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신발 디자인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과 조립식 다용도 레저화 개발

기여율 1/1

주관기관 ㈜이너스코리아

연구기간 2017.11.01 ~ 2018.10.31

명세서

청구범위

청구항 1

하면에 상부로 오목한 형태의 그물망용 홈이 형성된 신발 밑창 ;

상기 그물망용 홈에 삽입되기 위한 신발 밑창 결합부와 상기 신발 밑창 결합부를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복수의 갑피 결합부로 구분되는 갑피 결합용 그물망 ;

서로 조합되어 갑피를 형성하되 상기 갑피 결합부에 결합되는 복수의 갑피 형성 요소들 ;

상기 갑피 형성 요소들이 갑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상기 갑피 형성 요소에 결합되는 와이어 스트랩 구조와 다이얼 래싱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갑피 형태 유지 수단 ;

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물망 결합형 신발.

발명의 설명

기술분야

[0001] 본 발명은 갑피 결합용 그물망에 의하여 각 부품이 조립되는 그물망 결합형 신발에 관한 것이다.

배경기술

[0002] 일반적으로 신발은 신발 밑창과, 이 신발 밑창에 접촉 고정되는 갑피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.

[0003] 이와 같은 일반적인 신발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다.

[0004] 신발 전체가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일부가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경우에도 손상된 일부를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신발 전체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.

[0005] 또한 신발은 적어도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구분되며 이와 같은 용도에 따라 각각의 신발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

[0006] 또한 신발은 제조과정에서 신발 밑창과 갑피를 접착하는 공정이 필요하여 접착제 등의 유해물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다.

선행기술문헌

특허문헌

[0007] (특허문헌 0001) 대한민국 특허등록 제10-1825557호 "조립식 신발"(2018. 1.30 등록)

발명의 내용

해결하려는 과제

[0008]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, 신발의 일부 부품이 손상되는 경우에 그 일부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으며, 사용 용도나 취향에 따라 각 부품을 교체하여 신발의 기능성을 변경하거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아울러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조립에 의하여 신발을 완성함으로써 환경 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그물망 결합형 신발을 제공하고자 한다.

과제의 해결 수단

[0009] 상기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, 본 발명은, 하면에 상부로 오목한 형태의 그물망용 홈이 형성된 신발 밑창 ; 상기 그물망용 홈에 삽입되기 위한 신발 밑창 결합부와 상기 신발 밑창 결합부를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위치하는

복수의 갑피 결합부로 구분되는 갑피 결합용 그물망 ; 서로 조합되어 갑피를 형성하되 상기 갑피 결합부에 결합되는 복수의 갑피 형성 요소들 ; 상기 갑피 형성 요소들이 갑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상기 갑피 형성 요소에 결합되는 와이어 스트랩 구조와 다이얼 래싱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갑피 형태 유지 수단 ; 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.

발명의 효과

[0010] 상기와 같이 본 발명은, 신발의 일부 부품이 손상되는 경우에 그 일부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으며, 사용 용도나 취향에 따라 각 부품을 교체하여 신발의 기능성을 변경하거나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아울러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조립에 의하여 신발을 완성함으로써 환경 친화성을 높일 수 있다.

도면의 간단한 설명

[0011]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신발이 조립된 상태의 정면도,
 도 2는 도 1의 평면도,
 도 3은 도 1의 저면도,
 도 4는 도 1의 우측면도,
 도 5는 도 1의 신발이 분리된 상태의 주요부를 도시한 도면,
 도 6은 도 5의 그물망-갑피 결합체의 평면도,
 도 7은 도 1의 갑피 형태 유지 수단의 도면,
 도 8은 도 5의 신발 밑창의 저면도.

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

[0012]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한다.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. 그리고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으며,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도면 부호를 부여하였다.

[0013] 명세서 전체에서, 어떤 부분이 어떤 구성요소를 "포함"한다고 할 때, 이는 특별히 반대되는 기재가 없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.

[0014]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신발이 조립된 상태의 정면도이며, 도 2는 도 1의 평면도이며, 도 3은 도 1의 저면도이며, 도 4는 도 1의 우측면도이며, 도 5는 도 1의 신발이 분리된 상태의 주요부를 도시한 도면이며, 도 6은 도 5의 갑피 결합용 그물망 및 갑피 형성요소들이 결합된 상태의 도면이며, 도 7은 도 1의 갑피 형태 유지 수단의 도면이며, 도 8은 도 5의 신발 밑창의 저면도이다.

[0015] 본 실시예의 신발은 신발 밑창(100),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과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와 갑피 형태 유지 수단(310) 등으로 이루어진 그물망-갑피 결합체(200), 내피(400) 등으로 이루어진다.

[0016] 도 1 및 도 5에 도시된 내피(400)는 발을 감싸서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것으로서, 양말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 있으며, 적어도 발바닥과 발등과 발뒤꿈치를 감싸도록 형성된다.

[0017] 내피(400)는 착화자의 발의 사이즈에 따라 신축될 수 있도록 신축성 원단을 이용하여 제조된다.

[0018] 내피(400)의 내부에는 인솔이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체형으로 결합되어 보다 편하고 친환경적인 신발을 제공한다.

[0019] 신발 밑창(100)은 그 상부에 내피(400)가 장착되기 위한 내피 장착부를 형성하며, 내피 장착부에 내피(400)가 장착될 수 있다.

[0020] 신발 밑창(100)의 하면에 상부로 오목한 형태의 그물망용 홈(110)이 형성된다.

[0021] 그물망용 홈(110)은 신발 밑창(100)의 하면을 제1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복수의 제1홈과, 제1홈과 교차되는 제2방향으로 신발 밑창(100)의 하면을 가로지르는 복수의 제2홈으로 이루어진다.

- [0022] 즉 그물망용 홈(110)은 신발 밑창(100)의 저면 전체에 걸쳐 망 형태로 형성된다.
- [0023] 이와 같은 내피(400)와 신발 밑창(100)은 그물망-갑피 결합체(200)에 의하여 감싸여지게 된다.
- [0024] 그물망-갑피 결합체(200)는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과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.
- [0025]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은 선상 부재를 망 형태로 형성된 것이다.
- [0026] 즉 복수의 선상 부재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을 형성한다.
- [0027] 이때 선상 부재란, 선 형태, 즉, 끈 형태를 가진 부재를 말한다. 본 실시예에서의 선상 부재는, 통상적으로 신발끈보다는 얇은 굵기를 가지는 끈 형태이다.
- [0028] 본 실시예의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은, 신발 밑창 결합부와 복수의 갑피 결합부로 구분된다.
- [0029]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 중 신발 밑창 결합부는, 신발 밑창(100)의 그물망용 홈(110)에 삽입되며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의 중앙부에 위치한 부위이다.
- [0030] 즉 신발 밑창 결합부는 그 선상 부재가 그물망용 홈(110)을 지나도록 배치되어 신발 밑창(100)에 결합되는 부위이다.
- [0031] 이와 같은 결합에 따라, 그물망용 홈(110)이 상부로 깊게 형성되므로, 신발 밑창 결합부(211)는 지면과 충분히 이격될 수 있다.
- [0032] 한편 본 실시예에서 그물망용 홈(110)의 평면상 형태와 신발 밑창 결합부(211)의 평면상 형태는 서로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다.
- [0033] 즉 그물망용 홈(110)의 형태는 신발 밑창 결합부(211)의 형태에 대응하여야 한다.
- [0034]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 중 복수의 갑피 결합부는,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의 신발 밑창 결합부를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부위이다.
- [0035] 갑피 결합부는 후술하는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가 결합되는 부위이다.
- [0036]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들은 서로 조합되어 신발의 갑피를 형성하도록 이루어진다.
- [0037]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는 가죽, 합성피혁, 천 등과 같이 면상 부재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이다.
- [0038] 본 실시예의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는,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, 크게 내측용 갑피 형성 요소(221), 외측용 갑피 형성 요소(222), 전방용 갑피 형성 요소(223), 후방용 갑피 형성 요소(224)로 구분될 수 있다.
- [0039] 그러나 이와 같은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들의 형태 및 결합 구조는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다.
- [0040] 이와 같은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들 각각이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의 복수의 갑피 결합부에 각각 결합된다.
- [0041]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와 투명 핫멜트(hot-melt) 필름 사이에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의 갑피 결합부가 삽입되도록 한 후 열을 가하여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와 갑피 결합부에 핫멜트 필름이 융착되도록 하여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의 갑피 결합부가 핫멜트 필름을 매개하여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에 결합될 수 있다.
- [0042] 경우에 따라서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의 갑피 결합부가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에 물리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. 즉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에 구멍 내지 관통로를 형성한 후 갑피 결합용 그물망(210)의 갑피 결합부가 그 구멍 내지 관통로를 지나도록 한다면 양자가 물리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.
- [0043] 상기와 같은 그물망-갑피 결합체(200)가 갑피 형태를 가지도록 갑피 형태 유지 수단(310)이 더 마련된다.
- [0044] 본 실시예에서는 갑피 형태 유지 수단(310)으로서, 와이어 스트랩(wire strap) 구조와 이를 체결을 위한 다이얼 래싱 시스템(dial lacing system)이 제공된다.
- [0045] 이와 같이 복수의 갑피 형성 요소(221, 222, 223, 224)들은 갑피 형태 유지 수단(310)에 의하여 내피(400)를 감싸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.

- [0046] 한편 본 실시예의 그물망 갑피-결합체(200)는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신발 밑창(100)으로부터 분리되어 평면 형태로 펼쳐질 수 있으며, 도 1과 같이 갑피 형태 유지 수단에 의하여 입체적인 형태로 변경될 수 있다.
- [0047] 특히 그물망 갑피-결합체(200)가 도 6과 같이 평면 형태로 펼쳐지면 이를 쉽게 보관하거나 운반할 수 있다.
- [0048] 상기와 같이 본 신발은 신발의 일부 부품, 즉 그물망-갑피 결합체(200), 내피(400), 혹은 신발 밑창(100)이 손상되는 경우 그 부품만을 교체할 수 있다.
- [0049] 또한 본 신발은 신발의 일부 부품, 즉 그물망-갑피 결합체(200), 내피(400), 혹은 신발 밑창(100) 중 어느 하나를 교체함으로써 신발의 기능성을 변경시키거나 혹은 디자인을 변화시킬 수 있어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다.
- [0050] 또한 본 신발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조립에 의하여 신발을 완성함으로써 환경친화성을 높일 수 있다.
- [0051] 또한 본 신발은, 그물망-갑피 결합체의 그물망 중 신발 밑창 결합부만이 신발 밑창의 하면에 결합되도록 디자인하여, 그물망 내지 갑피 형성 요소가 지면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.
- [0052] 전술한 본 발명의 설명은 예시를 위한 것이며,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쉽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일 뿐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. 예를 들어, 단일형으로 설명되어 있는 각 구성 요소는 분산되어 실시될 수도 있으며, 마찬가지로 분산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 구성 요소들도 결합된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.
- [0053] 본 발명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,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발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.

부호의 설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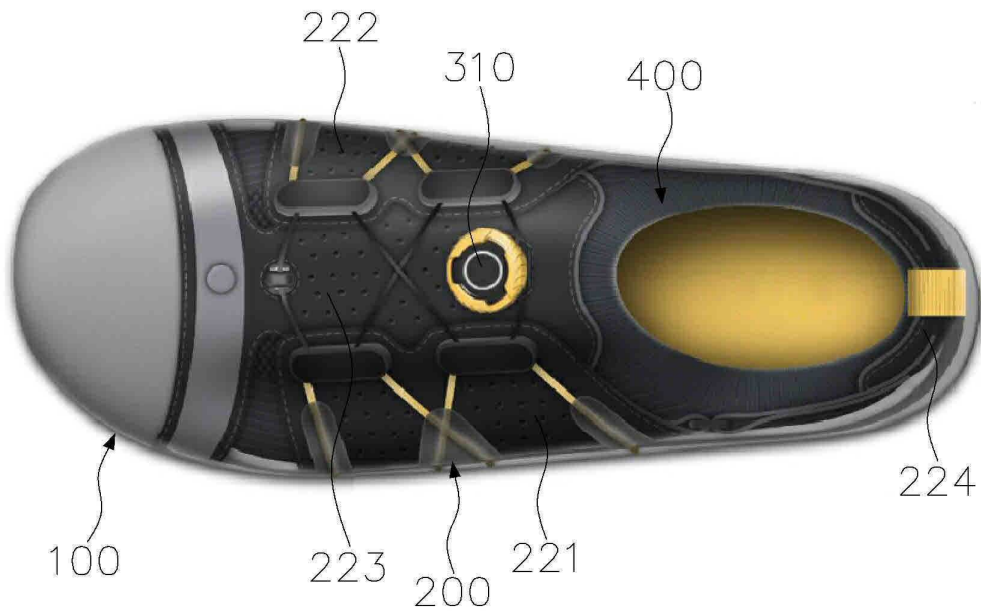
- [0054] 100 : 신발 밑창
- 110 : 그물망용 홈
- 200 : 그물망-갑피 결합체
- 210 : 갑피 결합용 그물망
- 221, 222, 223, 224 : 갑피 형성 요소
- 310 : 갑피 형태 유지 수단
- 400 : 내피

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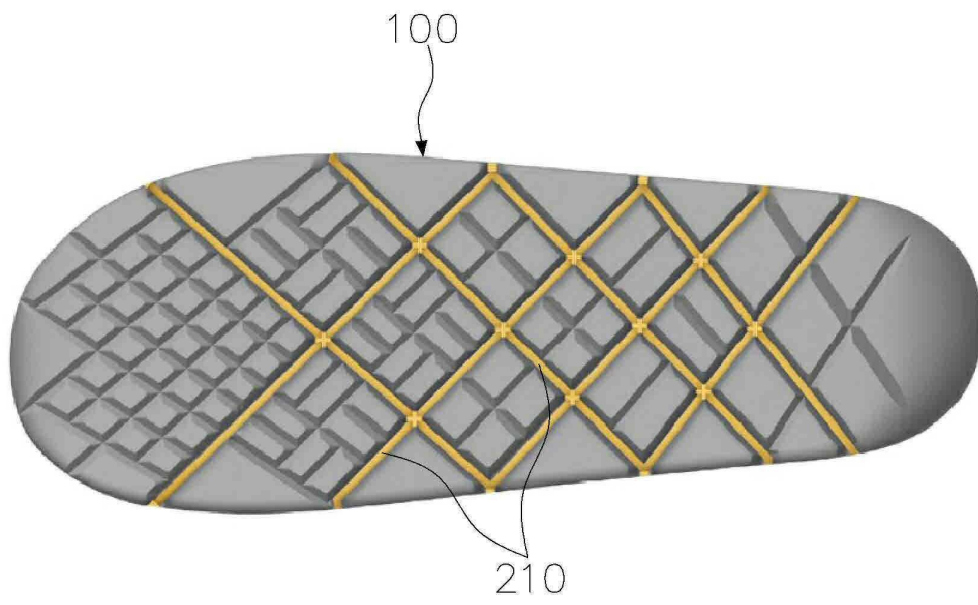
도면1



도면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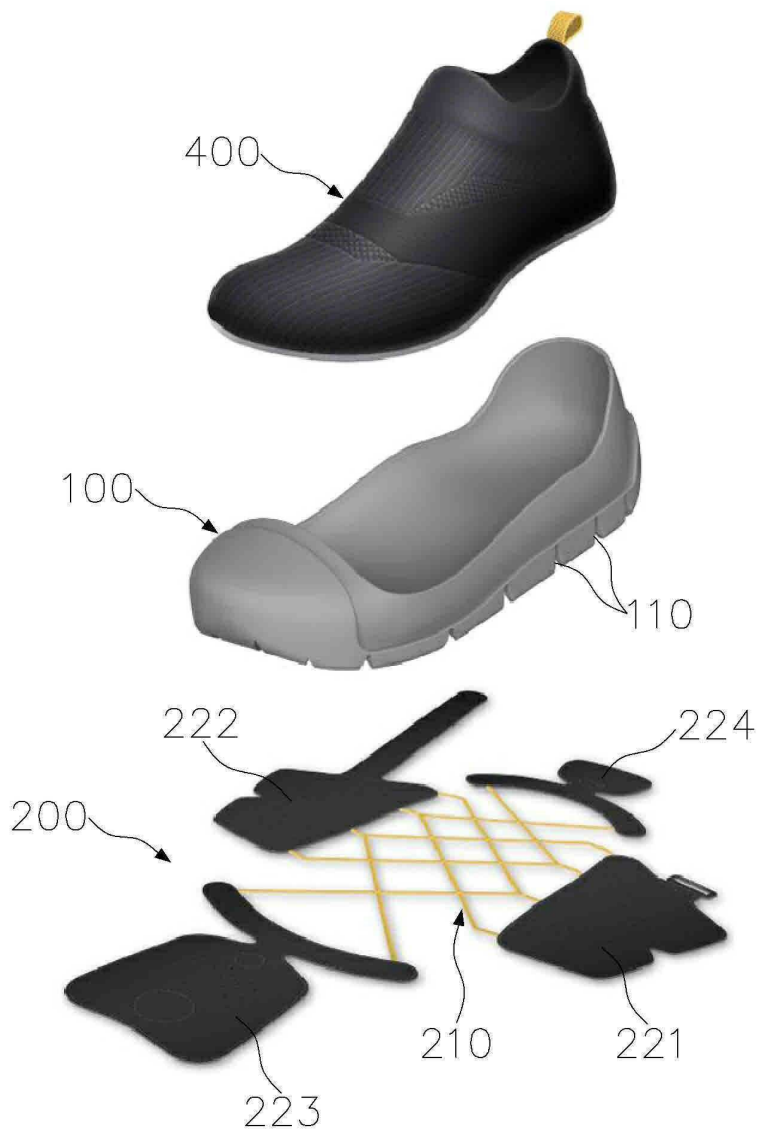
도면3



도면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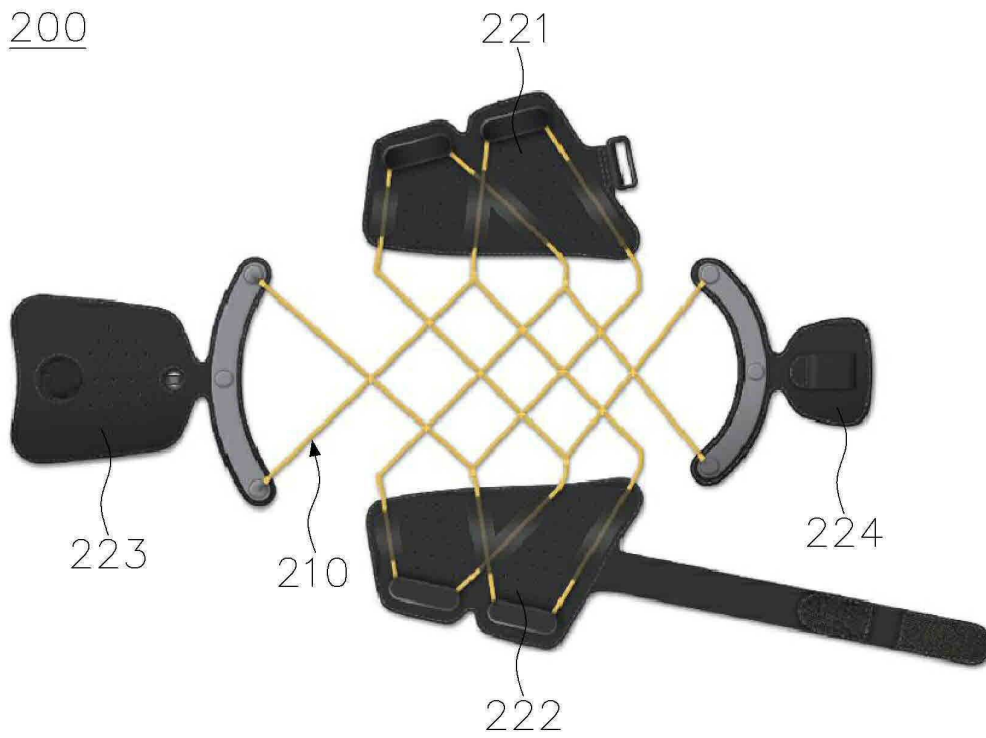


도면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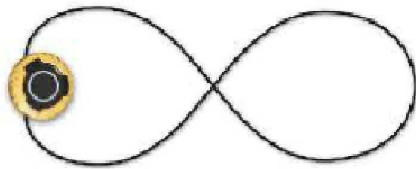
도면6

200



도면7

310



도면8

100

